2022년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1. 20.(목),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30건(안건번호 제2022-2741호~397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6호는 ◎◎◎◎◎◎ 및 ★★★★ 블로그에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중 순번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2호는 현재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743호~2746호는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2747호~2748호는 ★★★★ 블로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권장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2749호~2761호는 ◎◎◎◎◎◎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2762호~2764호는 ■■■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음악 저작물로 안건번호 제2022-2762호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763호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고 있으며 달리 보호해야 할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2764호는 심의요청 원저작물과 복제·전송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2765~397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57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41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1216호~1629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개에 접속할 수 있는 41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60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 제2022-2741호~397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3호는 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에서 영화 '○○○○○' 등 총 3건을 암호화를 거쳐 직접링크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총 3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274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직접 링크 형태로 게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제공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순번 1번~2번은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경고의견으로 검토하였으며 순번 3번은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1번만 삭제가 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확인 결과 순번 1, 2번 모두 삭제됨.

- A 위원: 순번 1번~3번의 정확한 구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디코드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난수암호가 게시되어 있음 해당 난수암호를 디코드 사이트에 입력하여 직접링크 주소를 얻을 수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디코드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디코드 관련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E 위원: 디코드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 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해외 사이트임.

- A 위원: 이용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바로 적발 및 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암호화를 통해 이를 막고, 동시에 게시판 이용자들 간의 소속감을 높이려는 정서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커뮤니티 안에서 이용자들의 재미를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C 위원: 구하기 어려운 영화들을 공유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최신 영화도 있고, 희귀한 영화도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3호 중 안건번호 제2022-27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하며 이미 삭제된 안건번호 제2022-2741호~2742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744호~2746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직접 링크를 ★★★★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 등 3건을 공중에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274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제공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744호~274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44호~2746호의 게

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747호~2748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한글 2022' 등 2건을 공중에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274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기술적 무력화 조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연결경로 또는 무력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747호~274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47호~2748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749호~2761호는 민원인들(실명 2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 및 웹하드에서 영상, 만화 불법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웹하드에서 만화 '◁◁◁◁◁◁◁◁◁' 등 13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275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만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749호~276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49호~2761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762호~276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된 영상, 음악 저작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악 '●●●●●●●' 1건을 스트리밍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총 2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276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음악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중 안건번호 제2022-2762호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 안건번호 제2022-2763호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고 있으며 달리 보

호해야 할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결 의견, 안건번호 제2022-2764호는 심의요청 원저작물과 복제·전송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으로 각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762호~27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에서 모니터링 한 것인가? '♥♥♥♥'에 대해 모니터링 요청이 있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저작물은 중점보호저작물로 지정되어 있음. 한편 모니터링 안건 중 따로 검토하여야 할 쟁점이 있는 사안 또는 착오 등으로 부결하여야 할 사안의 경우 사무처에서 일반 모니터링 안건과 분리하여 보고드리고 있음.

- E 위원: 권리자 저작물의 임베디드 링크와 직접 스트리밍을 어떻게

바로 구별하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2-2763호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음. 첫 번째 영상이 권리자 저작물의 임베디드 링크임. 권리자의 공식 채널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영상 내에 존재함. 반면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권리자 채널 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파일의 원 출처가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음.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2-2762호~2763호의 게시자는 서로 다른 사람인가? URL은 다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운영자는 동일하여, URL은 다름. 안건번호 제2022-2762호는 원저작물 8회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영상을 링크하였고, 안건번호 제2022-2763호는 같은 프로그램 7회를 링크하면서 음악을 함께 직접 전송하였음.

- E 위원: 안건번호 제2022-2763호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임베디드 링크와 스트리밍이 같이 섞여 있는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면서 본인의 에세이, 일기 등 창작성이 가미된 글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음. 작년 전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복제·전송권 침해는 있으나, 게시자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경고를 통해 비

교적 손쉽게 저작권 침해 부분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에는 보호필요성이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말씀대로 문제없는 임베디드 링크 형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보호필요성의 정도를 판단하시고 경고의 시정권고 의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음.

- A 위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게시자는 안건번호 제2022-2763호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제2022-2762호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만을 다시 게시할 수도 있을 것임. 게시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지?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2-2762호~2763호는 같은 게시자이므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강나래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2-2763호에 게시된 일부 음악저작물은 이미 권리자에 의해 재생이 중지된 상태임.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제2022-2762호~2763호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김연희, 심장섭, 위정현, E 위원: 안건번호 제2022-2762호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763호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고 있으며 달리 보호해야 할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

결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62호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76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76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영상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네이버 블로그에서 영상 '▶▶▶▶▶▶▶▶▶▶▶▶▶▶▶▶▶▶' 1건을 스트리밍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총 1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276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영상 일부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요청 원저작물과 복제·전송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764호

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 직접 링크, 임베디드 링크를 모두 게시하고 있음. 해당 임베디드 링크는 링크는 ◆◆◆ 게시자가 게시를 허락한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게시자는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 외부에서 재생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게시물 가장 마지막에는 같은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 비디오를 통해 다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전송 형태의 이용은 허락하지 않은 것임.

- C 위원: 이런 게임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게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은 어떠한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소개하는 게임은 대만 게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같은 방식의 게임은 굉장히 널리 제작되고 있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정확히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을 애니메이션으로 지정하여 심의요청되었는데, 실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그 애니메이션의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임. 원칙적으로는 심의대상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로 부결을 하고 있음.

- E 위원: 그렇다면 원저작물인 애니메이션과의 관계만 검토한다면, 게임과 ◆◆◆ 권리자와의 관계는 일단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애니메이션과의 관계에서는 명백히 부결사유가 있음. 다만 게임과 ◆◆◆ 영상의 권리자 또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저작자일 수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검토 보고드렸음.

- E 위원: 만일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복제·전송하였다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존재할 수 있으며 명백하게 부결될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이는 우리의 심의 절차에 비추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임. 보호원에서 심의 요청한 원저작물은 애니메이션인데, 사실은 게임이라는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이 게임이 애니메이션 영상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는 게임 개발사가 IP 계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게임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이고, 이를 플레이하는 시점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직접 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제2022-2764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64호는 심의요청 원저작물과 복제·전송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2-2765호~397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이터널스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854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이터널스 (2020)'을 3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1. 3. 개봉한 해외 해외 영화로 디즈니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임.
  (영화 '(영화)돈 룩 업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879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돈 룩 업 (2021)'을 380 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2. 8. 공개한 해외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 중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2765호~397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2-2765호~397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765호~3970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2741~2742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2-2762호, 2764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2743호~2761호, 2763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765호~397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9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

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216호~1629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2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